

부산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합45421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창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희종, 최예주

변론 종결2023. 1. 11.

판결 선고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10. 26. 부산 부산진구 C, 3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점포에서 'F 부산본점', 'G', 'H' 3개 업체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4.경 이 사건 가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1.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게 및 그 영업권, 물품 등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1) 이 포함된 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금)

1. 권리금 50,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총 60,000,000원

제5조(권리금, 보증금 납부기간)

1. 계약금 2,000,000원은 2021. 6. 30. 지불하며,
2. 중도금, 잔금 1,000,000원 매달 말일 기준 30일 지불하며,
3. 2021. 6. 30.~2023. 6. 30. 모든 금액(60,000,000원) 완납 조건으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명의 '피고 외 1명'으로 등록되며 통장과 모든 수익, 채고 등은 원고가 관리하게 된다. 매달 수백만 원 내지 천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피고는 관여할 수 없으며, 모든 수익금액은 계약금 2,000,000원 지급 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이 변경된 후부터 원고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수익금액에서 최소 생활비용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권리금,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한다.

제10조(중도금, 잔금 연체 시)

원고는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 잔금 매달 30일 기준 연체 시 1,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달 이상 연체 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 중도금은 받을 수 없다.

제11조(노하우 전수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용)

1. 피고는 원고의 'F'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적 노하우, 사무실 사용, 프랜차이즈 물류 시스템, 신규 브랜드 런칭, I 노하우 등 매장운영과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을 원고에게 알려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21. 6. 30.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21. 7. 23.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등록명이 '피고 외 1명'으로 변경되었고, 공동사업자로 원고가 등록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가게는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해 있는 등 그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실제 자산, 운영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온갖 감언이설과 과잉친절을 베풀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리금을 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으로 정하거나 사업자등록명을 공동명의로 하는 등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는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초년생으로서 당장 소득이 없어 이 사건 가게에 취직하였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조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에 대한 관리권한을 양도하고 매출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해제 주장으로 선행하여 본다).

다. 반환을 구하는 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대신 배달 플랫폼 업체인 'T'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161,000원에 이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취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합계 4,161,000원(= 2,000,000원 + 2,1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1. 4.경부터 2021.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다 보면 관리자가 되어 매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노력해서 큰돈을 벌어갔으면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을 보냈으나, 이는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메시지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특별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권유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피고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어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감언이설' 내지 '과잉친절'을 베풀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가게의 입지에 비해 많은 권리금이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이 사건 가게는 배달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T' 월 평균 매출은 21,020,487원²⁾에 이르는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매출증가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50,000,0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역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대략적인 운영실태와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특이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2023. 6. 30.까지 권리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거나 피고로부터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주요내용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J생)가 2021. 4. 25. 군복무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가게에서 2개월간 근무한 상태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가게의 매출수준 등에 비추어 피고가 취득하기로 한 권리금 50,000,000원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많은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여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조에서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 통장과 모든 수익과 재고 등은 원고가 관리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6. 30.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 관리권한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통장이 먼저 개설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1. 7. 26.에서야 뒤늦게 이를 개설한 점, ②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통장이 개설되자 2021. 8. 4. 'T'을 통한 수익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한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게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전부 넘겨주지 않았거나 총 매출액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수익 관리권한 이전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우석

판사전유상

판사김혜림

1)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문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 126,122,924원(= 2021. 1.경 23,388,710원 + 2021. 2.경 17,626,411원 + 2021. 3.경 20,467,102원 + 2021. 4.경 24,481,601원 + 2021. 5.경 22,445,800원 + 2021. 6.경 17,713,300원) ÷ 6개월, 원 미만은 버림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중도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5조 소정의 중도금, 잔금(매월 1,000,000원)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는 이 경우에 대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 속에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10조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비는 모두 2021. 7. 말경에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